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24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진성준 · 안호영 · 임오경
허영 · 황정아 · 박용갑
허성무 · 강준현 · 박상혁
김한규 · 박홍배 · 민병덕
김태년 · 김주영 의원
(총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여금 처벌하고 있으나, 그 처벌의 강도가 충분치 않아 수백번씩 반복적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복적인 무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와 관련하여서도 상습범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무고죄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상한만을 10년으로 두고 있을 뿐 그 하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벌금액의 상한도 1천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처벌 강화를 통한 무고 행위의 억제를 위해 무고죄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벌금액의 상한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무고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무고죄에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질서의 엄정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무고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6조의 제목“(誣告)”를“(무고, 상습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0年”을 “1년 이상 10년”으로, “1千500萬圓”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56條(誣告) 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 또는 懲戒處分을 받 게 할 目的으로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 對하여 虛僞의 事實 을 申告한 者는 <u>10年</u> 以下の 懲役 또는 <u>1千500萬圓</u>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u><신 설></u>	제156조(무고, 상습무고) ① --- ----- ----- ----- -----<u>1년 이상 10년</u> -----<u>3천만원</u>-----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 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u>2분의 1까지 가중한다.</u>